

의안번호	2207812
의 퇴 인	황정아의원
회 답 일	2025.04.16.
추 계 번호	25C0635
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의2 (노인에 대한 특례)	-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- 제1항에 따른 간병에 대한 급여의 방법·절차·범위·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3조의2 (노인에 대한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노인에 대한 특례(안 제13조의2)

- 개정안에 70세 이상 수급권자에게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타법적용자, 이재민 등이 포함된 1종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2종 수급권자로 구분
 -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는 제1차~제3차 의료급여기관 및 선택한의원, 치과의원 등에서 입원·외래·약제 이용 시 현행법 제7조제1항¹⁾의 각 호에 따른 진찰·검사,

1) 제7조(의료급여의 내용 등)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·부상·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약제·치료재료의 지급, 처치·수술·치료, 예방·재활, 입원, 간호를 받는 데 따른 의료비 등을 감면·면제 받을 수 있음

- 보건복지부는 2025년 “의료급여” 사업에 국비 기준 8조 6,882억원(국고보조율 75.7%)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간병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이 될 것이나, 개정안이 의료급여의 방법·절차·범위·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 기준과 계산 방법 등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²⁾ 현시점에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움
 - 예시로, ‘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’는 99.8만명(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65.6%), ‘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’는 35.3만명(23.2%)인데, ‘1종 수급권자’의 경우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, ‘2종 수급권자’의 경우 10%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됨
 - 또한 식대, 2~3인실 입원료, 치아홈메우기는 대상자에 따라 0~50%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으며, 자연분만, 중증질환자, 고위험 임신부 등 특정 대상자에 대하여도 시행령을 통해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음
 - 참고로,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라 2015년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참여 의료기관에서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(시범사업)가 진행되고 있으나,³⁾ 대상자가 증가에 따라서는 의료기관의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기준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음
 - 2023년 기준,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5,001명임

[표 1] 연도별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 수

(단위: 명)

	2019	2020	2021	2022	2023
합 계	1,396,039	1,625,488	1,944,493	2,041,684	2,466,537
건강보험	1,231,753	1,446,950	1,736,842	1,824,410	2,196,540
의료급여	137,878	147,054	168,043	173,003	214,996
기타	26,408	31,484	39,608	44,271	55,001

주: 기타는 산재보험 등을 포함

자료: 보건복지부

-
1. 진찰·검사; 2. 약제(藥劑)·치료재료의 지급; 3. 처치·수술과 그 밖의 치료; 4. 예방·재활; 5. 입원
 6. 간호; 7.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
 - 2) 제7조(의료급여의 내용 등)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·절차·범위·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,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 - 3)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21일 당·정 협의를 통해 「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」을 발표하였으며,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대상 병원 확대,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